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20415호, 2024. 3. 26. 공포, 2026. 3.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돌봄 통합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통합돌봄지원관 및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재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산업정책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인공지능 기반의 복지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3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공공의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신사법」이 제정(법률 제

21070호, 2025. 10. 28. 공포, 2027. 10. 29. 시행)됨에 따라 「문신사법」의 시행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자살 고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의료기기 및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보건 의료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기획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42호 및 제4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 통합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이하 “통합지원”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3.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7. 보건의료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의 관리·평가 및 수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8. 간호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9.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
11.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2.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3. 의약품·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4. 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15.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17.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18.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업무
19.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20.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육성
21.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22. 호스피스·완화의료(緩和醫療)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23.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조정
24.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

한 지원 및 관리

25.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
 26. 재난 의료 정책의 수립·조정
 27. 재난 의료 대비·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조정
 29.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원
 30.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3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32. 혈액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3. 제대혈(臍帶血)·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정책의 수립·조정
 34. 장기·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35. 헌혈 장려 등 혈액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6.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37. 한의약의 연구·개발 및 지원
 38.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
 39.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
 40.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조정
- 제41조제2항 후단 중 “78명”을 “8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명(6급 1명)은 교육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

급 1명)은 고용노동부, 2명(6급 2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기획예산처, 1명(경위 1명)은 경찰청, 1명(5급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제4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6(통합돌봄지원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 시조직으로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밑에 통합돌봄지원관을 두고,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에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둔다.

②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통합돌봄지원관은 제11조제3항제42호 및 제43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도의 기획·개선에 관한 사항
5. 신규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 실태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지원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통합돌봄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지역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성과평가 및 성과기반 지원체계 구축

3.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 서비스의 서식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8. 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통합지원 전담공무원의 확충, 교육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⑧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⑥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⑦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별표 4 중 총계 “847”을 “867”로 하고, 일반직 계 “838”을 “85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08”을 “828”로 한다.

별표 5의2,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의2]

보건복지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43조의2제1항 관련)

조직	정원
1. 건강정책국 정책관등	1명
2. 보건산업정책국 정책관등	1명
3.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	5명
4.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	3명
5. 건강정책국 1개 과	5명
6. 보건산업정책국 1개 과	10명
7. 보건산업정책국 1개 과	6명
8.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	3명
9. 보건의료정책실 1개 과	5명
10. 보건산업정책국 1개 과	3명

[별표 6]

보건복지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44조의4제6항, 제44조의5제4항 및 제44조의6제7항 관련)

1. 필수의료지원관(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2. 필수의료총괄과(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9
일반직 계	9
4급 이하	9

3.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이하	4

4. 통합돌봄지원관(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

5. 통합돌봄정책과(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5
일반직 계	5
4급 이하	5

6. 통합돌봄사업과(준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6
일반직 계	6
4급 이하	6

[별표 7]

보건복지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5조 관련)

1. 제45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2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2. 제45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3. 제45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4. 제45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5. 제45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4급 또는 5급 이하	1

6. 제45조제7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 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①·②(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1.(생략) <u><신설></u>	제11조(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1. ~ 41.(현행과 같음) 4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통합지원(이하 “통합지원”이라 한다) 추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3.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u><신설></u>	
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①·②(생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	제14조(보건의료정책실) ①·②(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건의료재정의 조달 및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 3.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

<u>항</u>	<u>지원에 관한 사항</u>
<u>4.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4.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u>
<u>4의2.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u>	<u>5.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제도 관리 등에 관한 사항</u>
<u>4의3.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u>	<u>6.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u>
<u>4의4. 간호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u>	<u>7. 보건의료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의 관리·평가 및 수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u>
<u>5. 보건의료장비, 병상 등 의료자원의 관리·평가 및 수급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u>	<u>8. 간호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u>
<u>6.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u>9. 의료법령 운영, 의료법인 관리 및 의료자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u>
<u>7.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u>	<u>10.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사항</u>
<u>7의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u>	<u>11. 의료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u>
<u>8. ~ 11. 삭제</u>	<u>12.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u>
<u>12. 의약품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u>	<u>13. 의약품·의료기기의 유통정책 수립·조정(보건복지부 소</u>

책 수립·조정(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한정한다)

14. ~ 28. 삭제

29. 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30.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31.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32.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33.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업무

34.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35.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육성

36. 호스피스·완화의료(緩和醫療)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37.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38.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

관으로 한정한다)

14. 주요 질병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15.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16. 기후변화 및 환경 관련 국민 건강대책의 수립 및 조정

17.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원폭 피해자의 지원

18.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업무

19. 국가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암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연구개발사업

20.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원·육성

21. 국가 암검진사업의 추진과 질 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22. 호스피스·완화의료(緩和醫療)의 활성화 및 암생존자 재활 지원

23.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조정

24.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

<u>급 의료기금의 운영</u> <u>39. 공공 보건의료정책의 수립</u> · <u>조정</u> <u>40. 국립중앙의료원 · 지방의료원 · 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u> <u>40의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조정</u> <u>40의3.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u> <u>40의4.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지원</u> <u>40의5.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u> <u>40의6. 제대혈(臍帶血) · 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정책의 수립 · 조정</u> <u>40의7. 장기 ·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조정</u> <u>40의8. 혈액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40의9. 헌혈 장려 등 혈액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41.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 ·</u>	<u>원 · 적십자병원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u> <u>25. 응급 의료정책의 수립 및 응급 의료기금의 운영</u> <u>26. 재난 의료 정책의 수립 · 조정</u> <u>27. 재난 의료 대비 · 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u> <u>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령의 제정 · 개정 및 정책의 수립 · 조정</u> <u>29. 인체유래생물자원 종합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지원</u> <u>30. 생물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u> <u>3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u> <u>32. 혈액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u> <u>33. 제대혈(臍帶血) · 조혈모세포(造血母細胞) 정책의 수립 · 조정</u> <u>34. 장기 ·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조정</u> <u>35. 헌혈 장려 등 혈액의 수급</u>
--	--

<u>조정</u> <u>42. 한의약의 연구·개발 및 지원</u> <u>43.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u> <u>44.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u> <u>45.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 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조정</u>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u>78명</u>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보	<u>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36. 한의약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u> <u>37. 한의약의 연구·개발 및 지원</u> <u>38. 한의약 인력의 양성·지도</u> <u>39.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지원</u> <u>40. 한약의 유통관리와 한의약 산업 진흥정책의 수립·조정</u> 제41조(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80명</u>----- ----- ----- ----- ----- ----- ----- -----. ④ -----
---	---

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4명(4급 2명, 5급 7명, 6급 4명, 경위 1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6급 1명)은 교육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2명(6급 2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경위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2. (생략)

<신설>

-----.

1. 1명(6급 1명)은 교육부, 3명(4급 1명,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2명(6급 2명)은 성평등가족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기획예산처, 1명(경위 1명)은 경찰청, 1명(5급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2. (현행과 같음)

제44조의6(통합돌봄지원관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밑에 통

합돌봄지원관을 두고,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에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둔다.

② 통합돌봄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통합돌봄지원관은 제11조제3항제42호 및 제43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각각 과장 1명을 두며, 각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⑤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도의 기획·개선에 관한 사항
5. 신규서비스 발굴 및 모델 개발 등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스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계부처 · 지방자치단체 등
과의 통합지원 정책 협력 · 조
정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 실태조사 · 연구 ·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지원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한 사항

⑥ 통합돌봄사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통합지원 추진을 위한 지역
계획 점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성과
평가 및 성과기반 지원체계
구축

3.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 컨설
팅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
항

4. 통합지원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특화서비스 모델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지원 서비스의 서식 등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45조(한시정원) ① (생략)

② 삭제

③ 국민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

④ (생략)

<신설>

8. 돌봄통합지원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통합지원 전담공무원의 확충, 교육지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⑦ 통합돌봄지원관, 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⑧ 별표 6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③ -----

----- 2027
년 12월 31일-----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과 그와 연계된 정보시스템의 통합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u>「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u>
<u><신 설></u>	<u>⑥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u>
<u><신 설></u>	<u>⑦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u>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4]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847</u>	<u>867</u>	+20
·	·	·	
·	·	·	
일반직 계	<u>838</u>	<u>858</u>	+20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808</u>	<u>828</u>	+20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5